

제정 : 2014. 1. 1.

개정 : 2023.11.1.

해병대군사학과 규정



단국대학교 해병대군사학과

해병대군사학과 훈(訓)

慧眼 · 眞實 · 獻身
(혜안) (진실) (헌신)

意 味

- 慧眼: 앞날을 내다보는 (사물/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식견 [學問]
- 眞實: 거짓이 없고 참됨 [生活]
- 獻身: 몸과 마음을 바쳐 있을 힘을 다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함 [精神]

해병대군사학과 학생 신조

하나. 자랑스러운 단국인으로서 창학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구국, 자주, 자립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하나.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켜, 진리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지덕체 연마에 매진하겠다.

하나. 장차 해병대 장교로서 충성·명예·도전을 생활덕목으로 삼아, 이웃·사회·국가·인류를 위해 헌신하겠다.

해병대군사학과 규정

해병대군사학과 규정 연혁

1. 제정(2013.09.01)

가. 해병대군사학과 규정은 해병대군사학과 학생들을 장차 전문적인 군사지식을 갖춘 직업장교로 양성하기 위하여 장교의 품성과 자질 계발, 잠재역량계발, 생활지도 등에 관한사항을 제정함.

나. 해병대군사학과 특성화 교육 및 활동, 다전공 ~~의무화~~권장, 졸업인증요건, 생활지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단국대학교의 학칙, 군장학생 규정을 적용하고, 학생군사교육 관련 법령을 준용함.

~~다. 특히 졸업인증요건과 다전공의무화 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장교 임관 시 병과선택, 임관 후 석·박사 위탁교육, 장기복무 선발, 진급 선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전역 시 제2전공과 졸업인증요건을 활용하여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문지식, 체력, 덕성을 갖춘 전문 직업 장교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품성, 자질, 잠재역량을 계발하기 위하여 ①학생들이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②학생들의 생활 목표 및 자세, ③학업관리, ④잠재역량계발, ⑤특성화 교육 및 활동, ⑥학생지도 및 활동, ⑦포상 및 징계, ⑧학생자치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안·진실·헌신의 정신을 배양하고, 상호 존중 및 배려, 절차탁마의 기풍과 전통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해병대군사학과 학생신분)

1.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해병대 전문 직업 장교가 되기 위해 군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2.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졸업 후 학사사관이 될 해병대 예비장교후보생이다.
3. ~~군장학생 신분으로 “군장학생 규정” 과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의 적용을 받는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구.군장학생) 신분으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규정의 성격)

1.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학칙과 ~~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의 하위 규정이다.
2. 이 규정은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에게 대학생활 및 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고, 교수와 훈육관의 학생 생활지도와 잠재역량계발 지도의 근거를 제공한다.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1. 이 규정은 해병대군사학과 재학생에게 적용한다.
2.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국대학교 학칙과 시행세칙, ~~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시행규칙을 적용하며, ~~학생군사교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장 생활목표 및 자세

제5조(책무)

1.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장차 전문 직업 장교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품성, 자질, 잠재역량을 계발하여 국가와 군에 헌신·봉사해야 한다.
2. 이를 위하여 대학생활간에 전문 직업 장교에게 요구되는 ①올바른 가치관과 윤리 ②고결한 품성과 강인한 체력 ③군사전문지식 ④인간 존중과 배려의 리더십을 함양하고, 해안·진실·헌신의 정신을 견지해야 한다.

3. 해안·진실·헌신의 해병대군사학과 훈을 실천하기 위하여 ①자신을 경영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항상 자신을 새롭게 변화·발전시켜야 한다. ③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4. 자신을 계발하고 절제하여, 지속 성장·발전 가능한 올바르고 좋은 습관을 갖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5. 학칙 등 대학이 정한 규정과, **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시행규칙, 해병대군사학과 규정,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자치활동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6. 해병대군사학과 학생다운 언행과 자세를 유지하고, 자긍심과 명예심을 견지해야 한다.

제6조(생활목표)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해안·진실·헌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학년별 생활 목표를 실천해야 한다.

구 분	생 활 목 표
1학년	자기 발견/이해, 대학생활 적응, 해병대군사학과 규정 숙지/준수
2학년	해병대 가치관과 장교 정신 함양/실천
3학년	전문 직업 장교에게 요구되는 잠재역량계발 목표 달성
4학년	인간 존중과 배려의 리더십 배양

제7조(정체성 확립)

1.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심리검사 및 진단, 자기성찰을 통하여 자기를 이해하고 발견하여 조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2. 전문 직업 장교로 성장하기 위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조기에 자신의 목표와 진로를 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절차탁마·건전 기풍 조성)

1. 선후배·동기생간 충고, 조언, 조력, 격려 등을 통해 매사 신중하게 절차탁마하고 건전한 생활 기풍을 조성해야 한다.
2. 해병대군사학과 상·하급생 관계는 상·하급자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배려의 동반자적 선·후배 관계이다.
3. 선·후배 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며, 사적인 제재, 명령, 지시, 소집, 교육, 간섭을 금지한다. 단, 훈육관 또는 학과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학생은 학습, 행사, 단체 활동 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지시, 소집, 교육, 감독 등을 할 수 있다.
4. 상급생은 술선수범하고, 학업, 잠재역량계발, 자기 경영·관리 등에 관한 자신의 경험과 기술(Know-how)을 하급생에게 전수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해병대군사학과 학생회 임원은 동급생 및 하급생의 해병대군사학과 규정 미 준수,

기강문란 행위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하며, 규정에 따라 상(벌)점을 부여하고 훈육관 (이후 학과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6. 이외의 상급생은 하급생의 해병대군사학과 규정 미 준수, 기강문란행위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선도하며, 해병대군사학과 학생회 임원에게 상(벌)점 부여를 건의할 수 있다.
7. 해병대군사학과생은 학생회 임원의 지적 및 보고서 제출 지시에 있어 지체 없이 훈육관에게 보고하고 지도와 조치를 받아야 한다.
8.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및 가혹 행위를 금지한다.
9.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을 금지한다.
10. 언어 및 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행위와 성적 접촉을 금지한다.
11.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이성교제는 도덕적 한계 내에서 허용한다.
12. **군장학생의 학과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와 행동을 금지한다.**
13. 해병대군사학과의 정체성과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해병대군사학과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제9조(용모 및 복장)

1.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개인위생을 청결하게 하고,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외적 품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전문 직업장교에게 요구되는 내적품위를 함양하고 유지해야 한다.
 - 1-1. 면도와 두발을 손질하여 청결과 단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 1-2. 학기(계절수업 및 계절학기 포함) 중 두발의 유색염색 및 펴를 금지하며, 해병대군사학과생 다운 두발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해병대군사학과 단체복장 착용은 학과장의 지도에 따른다.
3. 해병대군사학과 복장은 주 1회 이상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행사, 홍보, 견학 등 단체 활동 시 착용할 수 있으며,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착용할 수 있다.
4. 평상시 복장은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5. 해병대군사학과 제복 착용 시 귀걸이, 반지, 목걸이 등 장신구 착용을 금지하며, 자유복 착용 시에는 장신구 착용을 제한한다(장신구 착용 제한사항은 학생회 공지사항에 따른다).

제10조(언행 및 태도)

1.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며, 의사표현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경박하고 저속한 언어 사용을 금지한다.
2. 상급생에게 경어를 사용하며, 존경하는 마음가짐과 공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3. 상급생은 하급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언어를 사용한다.
4. 하급생은 상급생을 “000 선배님” 이라고 호칭하고 상급생은 하급생을 “000 후배” 라고 호칭한다. 동급생끼리 “000 형” 이라는 호칭 사용을 금지한다.
5. 허위보고를 근절하고, 허위사실, 불확실한 내용, 유언비어 유포를 금지한다.
6. 단정한 자세와 절도 있는 동작을 취하고, 의젓하고 당당한 보행 자세와 예의바른 행동을

유지해야 한다.

7. 보행 시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취식하는 등 품위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8. 상·하급생간 인사는 상호 목례와 격려의 인사말을 나누며, 교수에게는 공손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단, 해병대군사학과 제복 착용 시, 또는 아침점호교육 시에는 상급자에게 거수경례를 한다.

제11조(보고 및 건의)

1. 지도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①개인 신상의 변동, ②학업 및 잠재역량계발, ③학내·외 활동 등에 관한 사항, ④지시한 사항과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적시적절하게 훈육관과 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보고는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하되, 임의판단 또는 지체하여 조치와 지도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①최초보고, ②중간보고, ③최종보고를 한다.
3. 발전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에 훈육관과 학과장에게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훈육관과 학과장이 결정한 의견을 존중하고, 집단 및 연명상신을 금지한다.
4. 상급생은 하급생의 의견이 정당하고 유익하다고 인정될시 하급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하며, 필요시 훈육관에게 보고 및 건의한다.
5. 학생회 활동 및 행사, 동아리 활동 등 단체 활동은 시행 전 활동계획을 훈육관과 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활동결과는 시행 후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출석 및 소집)

1.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교육, 행사, 학생 자치 및 단체 활동과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집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은 최단시간 내 개인 사유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2. 유계결석의 조건은 ①본인 질병 치료와 직계가족 사망 ②본인 및 4촌 이내 친척의 결혼, ③대내·외 행사 참석, ④법원의 소환, ⑤기타 훈육관과 학과장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경우이다.
3. 무계결석은 사전 승인 없이 결석한 것을 말하며, 무계결석 시에는 7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벌점을 부여한다.
4. 비상소집을 위하여 학과 학생회와 학년별 비상소집 연락망을 편성·운동해야 한다.

제13조(안전 및 건강관리)

1.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항상 안전과 건강에 유의하여 신체의 손상과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2. 부상과 질병으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훈육관과 학과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전에 보고 곤란 시 치료 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3.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정례신체검사 결과

에 이상이 있을시 훈육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장 학업관리

제14조(교육목표) 해병대군사학과는 21세기 안보환경과 미래 전장 환경에 요구되는 전문 직업 장교가 갖추어야 할 기반지식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1. 국가안보 및 국방환경을 분석·평가하고 군사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군사 전문지식을 배양한다.
2.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미래의 전장 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체계적인 군사력 운용 이론과 전산정보처리 능력을 배양한다.
3. 군의 국제적 교류 확대 및 임무 증대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배양한다.
4. 지(智), 신(信), 용(勇)을 겸비한 군사지도자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지도력을 집중 계발한다.

제15조(교육과정)

1. ~~다전공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전공 이수를 권장한다. ※ 2024학년도 기준 23학번부터 적용**
2. 교양과목 및 특별강좌 수강과 자율학습을 통하여 학교와 해병대 측이 요구하는 졸업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학과 교과목 중 특성화 된 교육 활동을 통하여 장교의 품성과 자질을 계발한다.

제16조(학점 취득)

1. 졸업학점은 입학연도의 대학학칙에 명시된 취득학점을 적용한다.
2.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은 매학기별 평균 B^o(3.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3. 학기말 평균성적이 100분의 70미만인 경우는 ~~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한다.

[~~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3조(~~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3.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성적)] 법령 참조.

제17조(전공 교과편성)

1. 교과목 편성은 학기별 종합강의시간표 및 학교 홈페이지 학과 교과과정표를 참조한다.
2. 대학 교과목 개편과 교육협의회 결정에 의거 필요시 교과목을 개편할 수 있다.

제18조(전공 수강)

1. 학과기초 및 전공필수 교과목은 필히 수강해야 한다.
2. 제2전공과목 수강시간과 중복, 교환학생 파견 등으로 전공필수 과목 수강 곤란 시에는

군사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공 선택과목 중 유사과목을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

제19조(졸업)

1. 졸업요건은 학칙과 학칙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졸업학점 및 ~~다전공의무화(복수전공,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졸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학칙 제47조(조업요건)” 과 “학칙 시행세칙 제15장 졸업인증제” 를 참고한다.

제20조(군사학 부전공)

1. “학칙 제46조(다전공)” 과 “학칙 시행세칙 제7장 다전공” 을 참고한다.

제21조(재입학·편입학·전과)

1. ~~군장학생과~~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은 “~~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및 “~~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시행규칙” 에 따른다.
2.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의 신분에 변동이 있을시 학교(단국대)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규정 ~~내 장학금 지급 기준표~~” 를 ~~참조~~참조하고 따른다.
2-1.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신분으로 지급받은 모든 복장, 비품, 장구 일체는 학과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은 “학칙 제5장 신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 에 따른다.
4. 전과는 “학칙 제19조 (전부(과))” 와 “학칙 시행세칙 제6장 전부(과)” 에 따른다.

제4장 잠재역량계발

제22조(목적·배경)

1. 자율학습과 특성화 교육 및 활동을 통하여 전문 직업 장교 및 군사전문가로서의 품성, 자질, 잠재역량을 개인의 재능과 특성에 따라 계발한다.
2. 졸업인증요건과 ~~다전공의무화~~ 제도는 장교 임관 시 병과 선택, 임관 후 석·박사 위탁 교육, 장기복무/진급 선발에 요구되는 기본자격과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제23조(졸업인증요건)

1. 학교 측 졸업인증요건은 “학칙 제47조(졸업요건) ⑤항, ⑦항” 및 “학칙 시행세칙 제15장 졸업인증제” 를 참조한다.
2. 해병대에서 제시한 ~~졸업인증요건은 다음과 같다.~~추가적인 구비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가급적 4학년 1학기까지 달성하도록 권장한다.**

구 분	태권도	체력검정
졸업인증요건	1단 이상	2급 이상

제24조(졸업인증요건 달성)

1. 학교가 제시한 졸업인증요건 달성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2. 태권도(해병대가 제시한 졸업인증요건)
 - 2-1. 개인수련 ~~혹은 무도 교과목 수강~~을 통하여 졸업 전까지 1단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2-2. 품증은 단증으로 전환해야 한다.
 - 2-3. 태권도 졸업인증요건(단증 취득) 달성 후, 국기원에서 발급받은 품단확인서를 훈육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체력검정(해병대가 제시한 졸업인증요건)
 - 3-1. 체력검정의 기준은 “국방부 체력검정기준”을 적용한다(국방부 “체력검정기준표” 별도 공지).
 - 3-2. 학년별 체력등급 달성 목표는 다음과 같다.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달성 목표	3급	3급	2급	2급 1급 이상(권장)

- 3-3. 체력검정과 관련 학기 중 매일 아침 07시~08시(60분) 동안 체력단련 위주의 아침점호를 ~~교육을~~ 훈육관 지도하 실시한다.
- 3-4. 매학기 1회 이상의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목표 미달성자는 재평가를 실시한다.

제25조(졸업인증요건 미달성자) 졸업인증요건 미달성자는 훈육관이 관심을 가지고 별도 관리한다(~~학부모에게 통보~~).

제26조(~~군사 및 교양도서 탐독~~)

- ~~1. 군사전문지식과 교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군사 및 교양도서 탐독을 생활화한다.~~
- ~~2. 학과장이 추천한 권장도서 또는 본인이 선정한 도서에 대하여 학기별 독서계획을 수립하여 훈육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훈육관은 학생 개인별 독서 목록을 기록/유지, 훈육평기에 반영한다.~~

제5장 특성화 교육 및 활동

제2726조(목적) 전문 직업 장교와 군사전문가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성화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제2827조(특성화 교육)

1. 특성화 교육은 교과목에 반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중 편성에 제한이 있을시 계절수업의 형태로 구분하여 개설한다.
2. 특성화 교육의 교과목은 이수영역이 학과기초 또는 전공필수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 해외연수, 교환학생 파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특성화 교육 교과목 수강이 불가할 시에는 사전에 학과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다음 학기 교육과정에 필히 수강

신청 후, 참가해야 한다.

제2928조(특성화 활동)

1. 장교로서 품성과 자질을 계발하고 학습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군부대 방문, 안보 현장 견학, 군 행사참가 등의 특성화 활동을 실시한다.
2. 특성화 활동은 학과예산 또는 행사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며, 학년별 연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구분	활동(시기)명(일정)	주최 / 내용
공동	학과 체육대회(연1회)	학과 학생회 / 친목도모
	학술제 & 전적지 답사(학사일정 고려)	지도교수 / 연구, 체험 발표
	학과 졸업식(매년 2월)	학과 학생회 / 졸업생 환송 및 사은회

구분	활동(시기)명(일정)	주최 / 내용
신입생	단과대학 주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단과대학 학생회 / 대학학칙 및 대학생활 안내, 학과별 자체 세미나 실시
4학년	해외 군사·문화 탐방(7-8월 중)	학교(학과) / 해외연수

구분	활동(시기)명(일정)	주최 / 내용
1학년	서해수호의 날(3.24), 국군의 날(10.1)	국가보훈부/추모행사, 국방부/건군 기념행사
2학년	서울수복 기념일(9.28)	해병대 / 6·25 전쟁시 서울수복 기념행사 참가
3학년	해병대 창설일(4.15)	해병대 / 창설 기념행사 참가
4학년	연평도 포격도발(11.23)	해병대 / 추모행사 참가

3. 특성화 활동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실시한다. 학사일정, 협조 여건 등을 고려, 가용 학년 혹은 활동을 통폐합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특성화 활동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5. 특성화 활동은 필히 참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가 곤란 시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제6장 학생지도 및 활동

제3029조(개인 상담 및 지도)

1. 건전한 대학생활과 장래 진로 설계를 위해 지도교수와 훈육관에게 상담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학생들을 위해서 주임교수(학과장)는 학과 초빙교수를 전문상담교수로 임명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신입생은 훈육기록부 양식에 의거 기본적인 신상을 작성하여 훈육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훈육관은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4. 학생들의 대학생활, 정신건강 등 대학생활전반에 관한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 생활상담센터 및 양성평등상담소”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
5. 장래 진로 변경 시 훈육관과 지도교수에게 필히 상담을 받아야 한다.
6. 학생 개인시간과 훈육관의 가용시간을 고려하여 매학기 1회 이상 정기 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수시상담은 언제나 가능하다.
7. 학업성적 저조자, 졸업인증요건 미달성자, 적성평가 저열자, 생활태도 불량자 등은 훈육관이 지정한 시간에 특별 상담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130조(훈육 및 상호적성 평가)

1. 적성평가는 ~~훈육관이 군사학과생을 평가하는~~ ①~~훈육 적성평가와 단체생활에 있어 훈육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군사학과생 상호간에 실시하는~~ ②~~상호적성 평가로 구분한다.~~ 훈육평가는 자질, 품성, 생활태도, 체력을 훈육관이 평가하여 생활지도와 잠재역량 계발지도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적성평가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연1회(11월) 실시한다.
훈육평가는 4년간 종합하여 4학년 2학기 중 실시하며 5개 요소를 평가한다.
3.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훈육평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평가한다.

평가항목		
① 명예심(용모 및 태도)	② 준법정신	③ 지휘통솔(Leadership)
④ 도전정신(자기계발)	⑤ 교우관계(Fellowship)	

- ① 명예심(용모 및 태도), 준법정신
 - ② 지휘통솔(Leadership)
 - ③ 도전정신(자기계발 · 관리)
 - ④ 교우관계(Fellowship)
 - ⑤ 체력관리(1~4년 1차 체력검정 결과)
4.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각 평가 요소별 20점씩 부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피 평가자의 우수한 특성 및 개성, 충고 및 개선사항 등을 기술한다.
 - 4-1. ~~훈육 적성평가는 훈육관이 학년별 평가집단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4-2. ~~상호적성 평가는 군사학과생 본인의 적성 및 성적에 상관없이 동기생을 평가하며 평가 단위는 학년별 그룹을 형성하여 평가한다(본인에 대한 평가는 제외).~~
 - 4-3. ~~피 평가자의 우수한 특성 혹은 개성, 충고사항을 평가 보고서에 기재한다.~~
 - 4-4. ~~군사학과생 개인별 상호평가 방법은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하며 요소별 등급은 A(10), B(40), C(30), D(10), E(10) 비율로 적용한다.~~
 5. 적성평가~~훈육평가~~ 결과는 훈육기록부에 반영하고 생활지도에 활용한다.

제31조(초임장교 예비 병과분류) _ 「추가」

1. 매년 해병대사령부로부터 3, 4학년을 대상으로 「초임장교 예비 병과분류 계획」을 접수한다.
2. 해당 학년별 예비 병과분류(안)을 공지한다.
3. 예비 병과분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 3-1. 해당 학년 당사자 학생들의 의견수렴
 - 3-2. 병과 조정 인원 발생 시, 상담 진행 후 재조정
 - 3-3. 조정 불가 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학과 차원에서 조정 후 해병대사령부로 통보
 - 3-3-1. 다전공(복수전공 > 부전공) 관련 병과별 관련학과를 최우선순위로 한다.
 - 3-3-2. 최우선순위로 조정이 불가할 시, 누적 성적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3-3-3.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학생은 미배정 병과에 임의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병과별 관련학과	
보병	• 전 학과	
포병		
기갑		
*항공	• 누적성적(30%) + 체력(30%) + 공인외국어(40%)	
정보	• SW융합대학	
공병	• 공과대학, 환경원예조경학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정보통신	• SW융합대학	
군수	보급	• 경영경제대학, 환경자원경제학과, 생명자원학부, 식품영양학과, 식품공학과
	수송	• 경영공학과
	병기	•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재정	• 경영경제대학	
공보정훈	• 문과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문예창작학과	
군사경찰	• 법과대학	

- * 항공병과 : 체력 부분은 국민체력100 인증센터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기준으로 한다.
체력측정 인증서 유효기간은 예비 병과분류 월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1등급_30점, 2등급_25점, 3등급_20점, 3등급 미만_10점」으로 적용한다.
- ※ 성적은 누적학점에 대한 환산점수(백분율)를 기준으로 한다.
- ※ 공인외국어는 「공인영어성적 환산 기준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32조(생활관 입사 및 생활)

1. 생활관 입사는 학교 방침에 따르며, 생활관 관리행정팀과 학생회에서 정한 생활관 관리 규정과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생활관 이외에 거주하더라도 생활관 거주 학생과 동일한 일과표에 따라 최소한의 통제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생활관 배정은 생활관 행정팀으로부터 위임 시, 학생자치위원회(학과 학생회+과대표)와

결정에 따른다.가 배정할수 있다.

4. 생활관 규정에 의거 생활관 관리행정팀으로부터 상·벌점을 부여 받을 시 훈육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병대군사학과 상·벌점에 그대로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생활관 실태 점검은 해병대군사학과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주 1회 실시하며, 훈육관이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지도한다(생활관 관리행정팀 점검은 별도).

제33조(대외활동)

1. 대외활동 참가 시에는 사전에 주임교수(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후 참가해야 한다.
2. 대외활동에 참여시 대학과 해병대군사학과의 자긍심을 견지하고 명예를 고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대외활동간 올바른 언행과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대외활동 참가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34조(국외여행 및 파견)

1. 개인적인 해외여행은 학과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2. 어학연수, 교환학생 파견 등 기타 사유로 해외연수 및 파견 시에는 학점인정, 졸업 학점 취득 이상유·무, 졸업인증요건 충족 등을 고려하여 졸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가능하며, 사전 이를 검토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해야 한다.

제35조(교육과정소위원회)

1.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을 근거로 해서 매년 3월에 시달되는 교무처의 “00학년도 대학별 학부·학과(전공)별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위원명단 제출 요청” 공문을 참조한다.
2. ~~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해임과 관련된 사항은 해병대사령부로 심의를 요청한다.
3.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학생자치활동 지도) 학생자치활동 규정은 해병대군사학과 규정의 하위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37조(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편성)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자치활동 규정을 참조한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38조(목적)

1. 포상 및 징계는 자발적으로 대학의 학칙과 해병대군사학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데 있다.
2. 포상 및 징계는 올바르게 건전한 기풍을 조성하는데 있다.
3. 포상 및 징계는 자신을 경영·관리하고 지속 성장·발전 가능한 올바르게 건전한 생활

습관을 배양하고 촉진하는데 있다.

4. 학업성적, 졸업인증요건 저조로 수학능력이 부족하여 졸업이 불가능하거나 장교로서의 품성 및 자질 저열 시에는 조기에 전과, 편입을 권고하고 **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해임 및 제적에 대한 심의를 해병대사령부 측에 요청한다.

제39조(포상 및 징계) “학생상벌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상·벌점제도)

1. 포상 및 징계 결과를 상·벌점 제도에 적용한다.
2. 상·벌점 내용 및 결과는 훈육 자료로 활용한다.
3. 학생회 임원은 동급생 및 하급생의 모범적 활동, 해병대군사학과 규정 미 준수, 기강문란 행위 등에 대하여 상·벌점 부여를 훈육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학생들은 규정 미 준수, 기강문란행위 등에 대한 인원 발견시, 학생회 임원에게 상·벌점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5. 상·벌점 관련 사유서는 6하 원칙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6. 해병대군사학과 학회장은 학기별 2번(중간/기말고사 전) 상·벌점 종합현황을 훈육관에게 보고하고, 학생들에게 공지해야 한다(단, 훈육관에게 일일보고는 유지).
7. 상·벌점 기준과 세부내용은 학생회 구성원이 매 학기 수정/보완하여 개강과 동시에 학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공지해야 한다.
8. 상·벌점에 관한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학생회 공지사항에 따른다.

제41조(**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해임·제적 심의 및 조치)

1. **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다.
2. 학업성적 저조자, 졸업인증요건 미달성자, 품행 불량자, 단체생활 부적응자에 대한 **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해임 및 제적 심의를 해병대사령부에 요청한다.

제42조(졸업심의)

1. 졸업심의를 대학의 학칙과 학칙 시행세칙에 따른다.
2. 심의 시 예비 장교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훈육기록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3. 학과 교육과정소위원회 심의 결과 장교로서의 품성과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해임 및 제적 심의를 해병대사령부에 요청한다.

제8장 보 칙

제43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학칙 시행세칙 등 상위 규정 포함), ~~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군장학생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세칙 포함)에 따르며, 학과 교육과정소위원회의 결정 및 학생자치활동 규정, 회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5.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11. 1. 부터 시행한다.